

# 2026년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

## □ 사업목적

- 고부가가치 수출 수산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스타상품 발굴 등으로 수출 확대 도모

## □ 지원규모 : 총 68개사 내외

구분	스타트업 상품개발	스케일업 상품개발	스타 상품개발
대상	중소·중견 국내 수산물·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		
지원자격	-	수출실적 10만불 이상	수출실적 100만불 이상
지원규모	37개업체 내외	25개업체 내외	6개 업체 내외
지원금액	총 사업비의 80% 지원(지원품목 한정 수출실적 인정)		
	최대 30백만원	최대 50백만원	최대 200백만원
지원기간	지원항목[참고1] 중 실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내 지원		
	- 단계별 스타트업 0년 / 스케일업 0년 / 스타 최대 5년 -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지원		

※ 자세한 지원내용은 [《참고3》](#) 자료 참조

## □ 주요 특징

- 단계별\* 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 
\* 스타트업 → 스케일업 → 스타
- 스타트업 신청업체는 수출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
- 목표국가 관할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바이어 매칭 지원(선택사항)
- 「수출기업-무역지원센터-바이어간」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개발 컨설팅 제공

## □ 지원절차



\* (중간점검·최종점검) 개발 품목의 수출실적, 해외마케팅 결과 등 평가

## □ 사업신청 안내

- 접수기간 : 2026. 2. 5(목) ~ 2. 25(수) 까지
-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(biz.k-seafoodtrade.kr)을 통한 모집
  - (신청방법) 로그인(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) → 2026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→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→ 서류 작성 후 제출서류 업로드
- 문의처 :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부(02-2240-5633, 5636)
- 제출서류 목록

### [ 제출서류 ]

-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② 발표자료(비계량평가) \***사업계획서** 내용으로 PPT등 활용 발표(10분내 분량)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④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(조합 등은 생략 가능)
- ⑤ 최근 3년간('23~25년) 수산물 수출 실적증명원 (무역협회 등)
- ⑤ 표준재무제표증명('23~25년)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(해당 시)
- ⑥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, 입상경력 등(해당기업)
- ⑦ 수산물 품질관리사 등 기타 가점 해당사항 증빙(해당기업)

## □ 유의사항

### [신청 자격]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·중견기업

### [신청 제외 대상]

- 해양수산부 유사사업(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등) 중복 선정 불가
- 휴·폐업 기업
-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/기업
  - \* 단,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계열회사 포함)

### [기타]

- 비계량평가(발표) 일정 등에 대하여 접수 마감 후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
-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접수기한 내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거나,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관련 소요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2026. 2. 5.

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

## 참고1 지원항목 상세 내역

구분	지원항목	
상품고도화	기술이전비	▶ 국내외 수산식품 연구개발된 기술이전 관련 비용 지원
	시제품 생산	▶ 개발 제품 현지 소비자 선호도 테스트를 위한 샘플 제작비
	개발장비지원	▶ 제품개발에 소모되는 제작 기계 대여 및 소모품 구입
	산학연계	▶ 수출기업과 대학교간 협력을 통해 제품품질 개선 지원
	통관테스트	▶ 해당제품이 현지 통관상 문제가 없는지 무역애로 지원(통관 등)
	경쟁력 조사	▶ 개발예정 제품 해외 선호도, 가격, 맛에 대한 개선사항 및 컨설팅 지원
	브랜드 개발	▶ 해외 유통망(까르푸, 월마트) 입점 브랜드(디자인 등) 개발 지원
	레스토랑 메뉴개발	▶ 해외 현지 셰프 연계 레스토랑 메뉴 개발, 테스트 등 지원
	해외자문료	▶ 해외 품목별 자문위원(연구소, FDA, NOAA 등) 구성 개발 지원
	국내 자문료	▶ 전문가 자문료(수출관련 컨설팅, 상품개발·개선)
	인증비	▶ 인증비(할랄, 유기농 등 국제인증·등록비),
	등록비	▶ 지적재산권 취득·출원비(특허, 해외상표 출원, 캐릭터 사용비 등),
	검사비	▶ 안전성 검사비(성분검사, 용수검사 등)
	포장개선	▶ 포장디자인, 동판, 금형 제작비(포장재 인쇄, 제작비용은 미지원) ▶ 현지어 라벨링 제작 및 등록
	샘플 통관·운송비	▶ 샘플·통관 운송비(EMS 해외물류이용대금)
	해외마케팅	시장조사, 수출상담
바이어초청		▶ 바이어 국내 초청비(항공료, 숙박비)
수출관련 보험비용		▶ 수출(대금)보험, 환변동보험 등 수출 관련 보험 비용(통관 관련 제외) * 타 사업에서 관련 비용 지원받을 시 중복 지원 불가
대형유통망 쇼케이스		▶ 대형유통망 MD 대상 시식행사 및 쇼케이스 행사 지원
해외마케팅	홍보비	▶ 제품 홍보를 위한 인쇄물, 광고게재, 현수막, 해외소비자 대상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 되는 비용(단순 판촉물 지원 제외)
	마켓테스트	▶ 박람회 참가비용(임차비-기본부스, 운송통관비, 통역1인, 항공료, 숙박비) ▶ 마켓테스트(임차비, 운송통관비, 여비, 시식요원 고용비)
	해외판촉	▶ 대형 유통업체 마케팅(입점비, 임차비, 장치비, 판촉요원비, 홍보비)

## 참고2 심사방법 및 선정발표

### □ 심사방법 및 항목

- 계량 및 비계량평가 합계 총점 상위 업체 순으로 선정

구분	점수	평가기준
1차 (계량평가)	4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출금액(15), 수출금액 증가율(10), 자기자본비율(10), 수산식품 관련 인증 및 특허 획득 여부(5)*</li> <li>* (국내) ISO, HACCP, GMP, 친환경인증(유기수산물 등), 수산물품질인증 등 (국외) 미국FDA, HALAL(JAKIM, MUI, MUJS, IFANCA 등), FSSC22000 등</li> </ul>
가점사항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점 항목당 5점, 최대 2개항목 10점까지 인정</li> <li>: KFSH인증업체,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수산물품질관리사 보유 업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, 수출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업체(최근 3년), 수산물 수출 공로탑 수상 업체(최근 3년)</li> </ul>
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대 1개항목 5점까지 인정</li> <li>: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등</li> </ul>
감점사항	-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과거 선정 후 중도 포기 업체</li> </ul>
2차 (비계량평가) 참가업체 발표	6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평가방법) 선정위원회가 신청기업의 발표 내용 등 평가</li> <li>(평가자료) 사업계획서와 동일내용으로 구성된 PT파일, 인쇄물 등</li> <li>(평가결과)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산출</li> <li>상품고도화 적정성(10), 제품컨셉(10), 수출가능성(10), 참가업체 능력 및 사업추진 의지(10), 사업추진 방향성(10), 주요 바이어 현황(10)</li> </ul>
3차 (목표 국가 배정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점수 상위 업체부터 목표 수출국 우선 배정</li> <li>조정 불가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</li> <li>차순위 업체부터 재조정하여 최종 선정</li> </ul>

### □ 선정발표

-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

## 《스케일업》 상품개발

### □ 사업개요

- (대상) 중소기업 한정, 국내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 식품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
- (지원자격)
  - 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업체
  - ※ 최종점검 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선정가능
- (지원규모) 25개 업체 내외
- (지원금액) 업체당 50백만원
  - 상품고도화비 60% 이상, 해외 마케팅비 40% 한도
  - 총 사업비 집행액의 80% 지원
- (수출의무액)
  - (0년차) 기준금액(50백만원)의 100%이상
- (정산금액) 사업비집행액 × 80%(지원비율) × 수출의무액 달성률(%)

### □ 지원품목

-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
  - 지원하는 수산가공식품은 수산HS코드\*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
  - 수산HS코드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수행 관련 실적으로 불인정

\*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

## 수출유망상품화 사업 FAQ

### Q1. 수출의무액은 무엇인가요?

A. 수출의무액이란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수출해야하는 금액입니다. 각 단계별, 연차별로 수출의무액은 다릅니다. 예를들어 스케일업의 경우 수출의무액은 기준금액의 100%입니다. 따라서 기준금액 5천만원의 100%인 5천만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해야 합니다.

### Q2. 수출의무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수출의무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비율대로 지원금액을 지원받습니다. 예를 들어 수출의무액을 80%만 달성했다면 「지원금액 \* 80/100」의 비율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

### Q3. 사업비 정산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?

A. 사업비 정산 기준을 참고하시어 각 지원항목별 한도내로 집행하시고 증빙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. 집행시마다 각 증빙서류들을 갖춰주시면 추후 사업비 정산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.

### Q4. 지원금액이 5,000만원이라면 얼마를 집행해야 하나요?

A. 각 단계별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80%(자부담 20%)입니다. 따라서 지원금액이 5,000만원이면 6,250만원(부가가치세 제외) 이상을 집행하셔야 됩니다.

### Q5. 수출실적을 환산하는 환율은 어떤 기준인가요?

A. 사업 기간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평균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합니다. 예를 들면 '25년의 경우 '25년 사업기간['25.1.1~11.19(최종점검 시점)] 하나은행 최초고시 연평균 매매기준율인 1,441.09원이 기준입니다.('26년 사업은 '26년 사업기간('26.1.1~최종점검 시점) 기준)

### Q6.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지원을 받다가 미선정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?

A. 미선정 되더라도 기존 수출유망상품화 개발 제품에 한해 무역지원센터 연계 바이어 소개, 박람회, 상담회 시 홍보관 제품 전시를 통한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해드립니다.